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7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2 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상장법인)

세무 및 법률정보

- 2021 년 세법개정안
- 2021 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2022 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회계정보 등

■ 2022 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6.28]

▣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 '19년부터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함에 따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작년부터는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p>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 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가액 추정 등)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p>※ (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p>	<p>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p>※ (업종) 전 업종</p>
<p>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 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금융부채 관련 주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 질적양적 정보 <p>※ (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송업</p>	<p>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 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 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p>※ (업종) 전 업종</p>

개요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4 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

◦ 금번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하여 회사는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특히, 작년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니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

※ 실제 심사대상 선정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2. 2022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선정배경)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 특히,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 빈번

□ (대상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9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4000	1차 금속 제조업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H51000	항공운송업
J00000	정보서비스업(58~63)
N75000	사업지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 (선정기준)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 자산손상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21.1.11. 보도)을 참고하고 감독당국은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

①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 예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할인율, 매출 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

회계오류 예시

① A 사는 종속기업 甲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 과정에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고 실제원가율과 차이가 큰 목표원가율을 적용하는 등 미래현금흐름을 과대 추정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고,

- 사업결합을 통해 인수한 종속기업 乙에 대해서도, 인수 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 및 투자주식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순자산가액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② B 사는 무자본 M&A 를 통해 인수한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인터넷단말기 제조사인 ◇◇사 투자 명목으로 관계기업 丙사에 송금한 후 이를 회수가 불가능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丁사에 대여하도록 하였음에도 丙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丙사는 丁사에 대한 대여금을 손상처리 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소 업종을 대상**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新수익기준

(K-IFRS 제 1115 호)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모형(5 단계) 적용

‘수익인식모형(5단계)’ 주요 내용

핵심원칙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수익인식 5단계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의 실질 계약을 식별 - 계약승인 및 의무 확인 -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 대가의 회수가능성 등 계약의 결합, 계약 변경 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이전을 약속한 의무의 식별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예시 : 진행률 측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 - 할인, 환불, 정려금 등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3단계의 거래가격을 2단계의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에 따라 배분 거래가격의 후속적인 변동효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반품권 있는 판매, 보증, 본인/대리인, 라이선싱, 제매입 약정 등 추가 적용지침의 고려

- ②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등 포함

회계오류 예시

- C 사는 새로 진출한 바이오사업에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 생산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판매대리점 □□사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 특수관계자 甲사와 거래처 乙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 □□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 매출을 은폐
- D 사는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 丙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면서 丙사가 보관중인 장기(3~5년) 미판매 위탁제품(의료기기)를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일시에 회계처리하였으나,

 - ①제품 특성상(표준규격 이외 스펙) 판매가능성이 낮고, ②기존 매출채권이 연체되고 있으며, ③판매대금 회수시기가 불명확하는 등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과대계상
 - * D 사가 지급결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丙사가 정하도록 함

3.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선정배경) 주주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여,
 ◦ **新금융상품기준(K-IFRS 제 1109 호 및 제 1107 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식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 (대상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

금융부채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1000	음료 제조업
C25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0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F00000	건설업(41~42)
H00000	운수업(49~5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 (선정기준)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하여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

*** 금융부채 분류(6 가지)**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 ③ 금융보증계약
-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 ⑥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②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금융부채 만기분석, 위험변수(이자율과 환율 등)로 인한 민감도 분석(최대 손실예상액),

회계요류 예시

- ① E사는 기존 농기계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PEF 甲사(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으로 SPC 乙사를 설립하여 ◆◆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PEF 甲사에게 ◆◆사의 실적에 근거한 SPC 乙사의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보유중인 SPC 乙사 주식 전부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② F사는 특수관계자 丙이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③ G사는 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거래처 丁에게 타 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어음(매출채권)을 배서하면서, 丁이 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G사가 상환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관련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처리하여 금융부채를 과소계상

4.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선정배경)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하여 공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최근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점검 필요
-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소 업종을 대상**
- (선정기준)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 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
 - ②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기재
 - * 부문별 재무정보(당기손익 등)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

회계오류 예시

- ❶ H 사는 4 년 연속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게 되자 관리종목대상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H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자문료, 임차료 등)을 종속기업 甲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처리)한 후 종속기업의 영업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 ❷ I 사는 카지노 사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자 VIP 고객 모집인 □□ 등에게 지급한 고객알선 마케팅 비용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바로 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화하여 판매관리비인 지급수수료가 아닌 영업외비용인 기타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 ❸ J사는 총 수익의 10% 이상을 매출한 주요 고객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과 해당 주요 고객별 매출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향후 계획

5. 향후 계획

-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
 -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
- 금융감독원은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붙임 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K-IFRS 제 1036 호(자산손상)**에서는 제 1110 호(연결재무제표)와 제 1028 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외부정보(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 예상,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등)과 내부정보(자산의 진부화,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의 징후를 다양하게 고려
 -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 등을 기초로 회수가능액을 추정

- **K-IFRS 제 1110 호(연결재무제표)**에서는 피투자자에 대해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에 모두 해당되면 투자자를 지배기업으로 본다고 규정

- **K-IFRS 제 1028 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면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으로 보며, 약정상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공동기업으로 규정

- **K-IFRS 제 1027 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K-IFRS 제 1115 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 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

* (5 단계) ① 1 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 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 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 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 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K-IFRS 제 1024 호(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대손상각비 등 포함)과 거래금액(재화의 매입이나 매출 등)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③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K-IFRS 제 1109 호(금융상품)에서는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 공정가치로 인식한 후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하도록 규정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양도 시 수취대가 혹은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로 인해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과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측정
-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가) 손실충당금
 -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보증제공으로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가) 손실충당금
 -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대출로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 **K-IFRS 제 1107 호(금융상품)**에서는 제 1109 호에서 정의한 범주별로 장부금액을 주식에
공시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 생기자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노출액,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금융부채 만기분석,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예 : 이자율과
환율)
민감도 분석 등 금융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을 공시

④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K-IFRS 제 1001 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 **K-IFRS 제 1108 호(영업부문)**에서는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다음의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경영진이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각 영업부문에 대해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 등의
정보를 별도로 보고
 - (통합기준) 제품과 용역의 성격, 생산과정의 성격,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규제환경의 성격 등
 - (양적기준) 부문수익(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수익(자산) 합계액의 10% 이상 등
 -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각 제품과 용역별, 지역별, 주요 고객별(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수익 등의 정보 공시

불임2

붙임 2
회계이슈 선정 현황('14~'21년)

대상회사 선정연도	중점점검 회계이슈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⑨ 미청구공사(호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 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㉑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㉒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㉓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㉔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종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㉛ 국외 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1 세법개정안

2021 세법개정안

- 정부는 2021.7.26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원방식) 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좌 등)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대	중견	중소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개정이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별표 7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시행일부터 3년 적용
○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15%)	○ (좌 등)
○ (적용기한) '21.12.31.	○ '24.12.31.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추 가>	<input type="checkbox"/>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 (좌 등) ○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 의 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등)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구 분	중소		중견	대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	기 타	700	770	450	450	-	-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좌 등)						
○(적용기한) '21.12.31.					○'24.12.31.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59 의 4㉔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23.12.31.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6.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91 의 18)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 대상 : 19세 이상 국민, 총 납입한도 : 1억원(연 2천만원), 가입기간 : 3년 이상
 - ** 농어민·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 ***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주주 제외)되고,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통산
-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 세율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 (개정안)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손실 발생 시 ISA 내에서 통산)
 - 그 밖의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 의 4)

현 행	개 정 안
<p>□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p> <p>○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p> <p>○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p> <p>-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p>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8.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 의 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p>*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p>-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 의 14, 법인법 §74 의 2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15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p style="font-size: small;">*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p>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 의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 (좌 등)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제출한 시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감경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초과 1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초과 2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초과 4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 기한 후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한 후 제출시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감경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월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월 초과 6월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초과 1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초과 2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47 의 4·47 의 5, 관세법 §42)

현 행	개 정 안
<p>□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p> <p>○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p> <p>*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p> <p>** 일할분(일 0.025%)만 면제(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p>	<p>□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p> <p>○ 기준금액 상향조정 :100만원 → 150만원</p>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 의 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p>□ 납부지연가산세율</p> <p>○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1일 0.025%(연 9.125%)</p>	<p>□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p> <p>○ 日 0.019~0.022%* 범위 내 결정</p> <p>*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p> <p>※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p>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input type="checkbox"/>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1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좌 등)
○ (적용기한) '21.12.31.	○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1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 (좌 등)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 10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요건 개선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①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㉓, ㉔ 중 어느 하나에 해당) ㉓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㉔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①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②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③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좌 등)

<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주요내용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21.7.월.9.월.부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 추진배경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 주요내용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과세표준	표준 세율 (공시 6억원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원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원 이하 (공시가격 1억이하)	0.1%	0.05%	~3만원	50.0%
0.6~1.5억원 이하 (공시가격 1억~2.5억)	6.0만원+0.6억원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원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원 이하 (공시가격 2.5억~5억)	19.5만원+1.5억원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원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원 이하 (공시가격 5억~6억)	57.0만원+3.0억원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원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원 초과 (공시가격 6억초과)		-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 주요내용 :
 - 기존 균등분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 75 조의 4 제 2 항, 「소득세법」 제 81 조의 7 제 1 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 추진배경 :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1 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 2)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전법령해석소득 2021-697, 2021.06.3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 ~ '18.3월: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 '18.4월 ~ '21.3월: 중견기업(동 기간동안 소득세 감면받지 않음)

- '21.4월 ~ : 중소기업(질의대상 기간)

- '18.3월 이전에 질의법인에 취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해당하여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18.4월 중견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동 법인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은 입사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 다시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위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서면-2021-국제세원-1952, 2021.06.11)

(사실관계)

- 스웨덴법인은 의약품 개발·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스웨덴 소재 법인이고, 위탁제조법인 A는 스웨덴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으로서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B법인은 스웨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스웨덴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B법인에게 판매(A법인이 국내에서 B법인에게 인도)하고 B법인이 스웨덴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 A법인은 제품 공급계약에 개입함이 없이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스웨덴법인을 위해 제품을 수탁제조하며 보관·인도 등 예비적·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B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함.

(질의내용)

- 스웨덴법인이 국내 특수관계없는 법인 A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회신)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